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20
----------	-----

제출년월일 : 2015년 6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의 관리 강화와 지방 재정 운용상황의 주민공개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5조)

1) 위원회의 구성

가) 15명 이내 공무원위원과 위촉(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 초과 금지

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 초과 금지

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

라) 위원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마) 간사: 예산운영담당사무관

2) 기능: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 관한 사항

가) '제척·기피·회피'의 사유:

- ① 심의대상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 ②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중인 자

나) '해촉' 사유:

- ① 심신 장애 또는 장기여행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1) 회의 소집: 위원장

*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족수: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투자심사업무 담당부서의 실무투자심사단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가) 위원회의 심사 전 단계로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 기본항목에 대한 실무차원의 심사 실시

4) 관계공무원 등의 회의 출석·발언 및 자료 제출의 근거조항 규정

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1) 기능: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 선정사항 심의

2)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규정 준용

마.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1)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바. 운영세칙, 시행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부칙 제1조~제2조)

1) 세칙규정: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음

2) 시행일: 공포한 날

3)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가)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인정

나) 조례에 따라 최초 구성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일인 2017년 4월 9일까지로 함

* 1996년 10월부터 기수별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6월 현재 제10기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임(2015. 4. 10.~2017. 4. 9.)

다) 「지방재정법」의 위원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명확하게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4(관계법령 조문)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37조(투자심사), 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3) 서울특별시교육청투자심사위원회운영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별첨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협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15. 5. 14. ~ 5. 25.): 별첨2(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투자심사위원회운영규칙」으로 되어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법률상 자문기구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어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4
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 분석 평가: 원안 동의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2조 (기능)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명직 :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투자심사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재정 또는 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다만, 어느 한 성

(性)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운영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② 심의대상사업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안전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배부 등) 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안전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안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실무투자심사단) ① 교육감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 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 실무심사를 위하여 실무투자심사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투자심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등)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11조 (기능)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3조 (위원회의 통합 운영) 심의위원회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정투자심사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서울특별시교육청투자심사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교육청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위원 임기는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9일까지로 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첨 1】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육재정 관련 자문기구인 교육감 소속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예산 법규임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행정6급 정광채 (02-3999-330)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제출 의견 없음'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서울교육013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예산담당관	
	담당자명	정광채	전화번호 02-399-9330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5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예산담당관)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양(兩)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한 조례 제정임.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항목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원안대로 추진함에 동의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5년 05월 22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박수정/02-3999-307)			
예산담당관장 귀하			

【별첨 4】

관 계 법 규

■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 가. 교부현황
 - 나. 성과평가 결과
 -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② 삭제

③ 삭제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

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투자심사위원회운영규칙

[시행 2013.8.6.]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40호, 2013.8.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예산담당관, 학교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 (개정 2013.8.6.)
2.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인사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해당 투자 및 용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사자이거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투·용자사업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2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5. 5. 16)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제2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실무심사를 위하여 실무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투자심사부서와 사업관련부서 공무원 등으로 정하며 매 투자심사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8.6.)

제11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발언)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의뢰부서 공무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